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
[대구지방법원 2002. 11. 29. 2002구합6295]

【전문】

【원 고】강신욱외 23인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외 4인)

【피 고】대한주택공사(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호)

【변론종결】2002.10.25.

【주문】

1

- 1. 피고가 2002. 4. 23. 원고들에 대하여 한 환호아파트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【청구취지】주문과 같다.

【이유】

11. 처분의 경위

[이유]

11. 처분의 경위